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청구 매뉴얼

2026.1.



목 차

1. 개요

- 법적근거
- 차이점

2. 청구 특이사항

- 사전점검사항
- 화면별 확인사항

3. 예상 질의사항

01 개요

법적근거, 차이점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 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은 월 4회 이상, 방문간호는 월 2회 이상 각각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0항(개정 中)
 - ⑩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가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0항(개정 中)

1.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고,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각각 이용한(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를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법적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0항(개정 中)

3.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제7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둘 중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의 범위가 더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형 통합 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법적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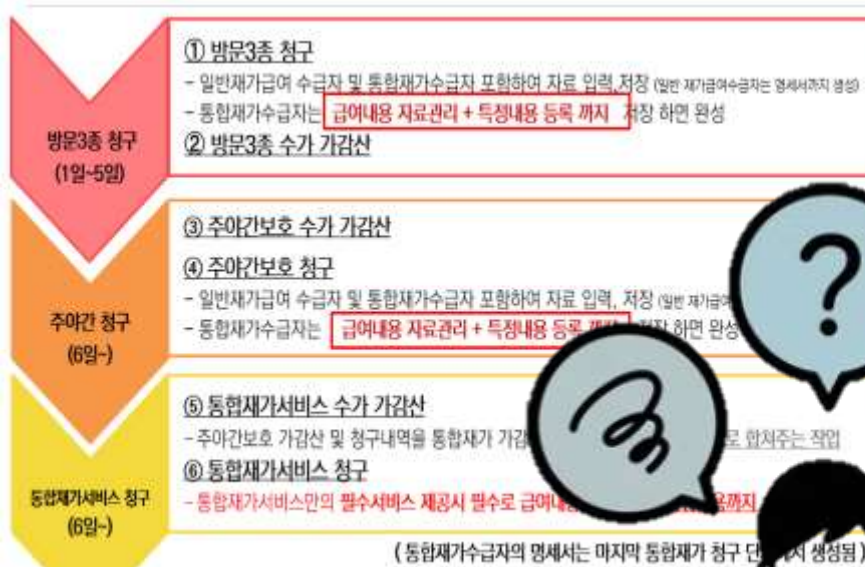
-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 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⑧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에 대한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의 주야간 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차이점

● 기존 통합재가 청구방법(~'25.12월)

- 방문 3종 청구 및 수가가감산 ▶ 주야간 가감산 및 청구 ▶ 통합재가 가감산 ▶ 통합재가 청구
- (문제점) 여러 급여종류의 서비스내용을 **모두 합산하여 통합재가청구를 진행**함에 따라, 청구절차가 일반 재가급여에 비해 복잡



간결화 필요



■ 차이점

● 통합재가 新수가 청구방법('26.1월~)

- (변경사항) 일반 재가급여 청구 진행 시와 동일하게 급여비용 청구 실시
 - 별도의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용 청구절차 X**
 - 서비스유형별 산정기준 충족하는 경우, 월한도 추가산정 또는 주야간보호형 가산 지급

	급여비용 청구 (요, 목, 간, 주, 단)	통합재가 주야간보호형 가산비용 청구
가정방문형	0	X
주야간보호형	0	0



02 청구 특이사항

사전 점검사항, 화면별 확인사항



■ 사전 점검사항

● 서비스 제공내역

- 서비스 횟수 :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 서비스 이용량 : 월 한도액의 80% 이상

● 추가산정 제외대상(타 기관 포함)

- 월 중 가족요양 이용한 수급자
- 월 중 통합재가 서비스 유형 변경한 수급자(통합재가 가정방문형 ↔ 주야간보호형)
- 월 중 일반 재가급여 이용한 수급자(통합재가서비스 ↔ 일반 재가급여)

■ 화면별 확인사항

● [급여내용 자료관리] 탭

- '통' 칼럼: 급여계약 시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또는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으로 계약 및 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됨



요양요원 전송내역			서비스내용 입력			급여내용 자료관리		
급여제공일 2024-12-01 ~ 2024-12-31			처리상태 입력건			조회		
수급자명			저장구분	전송구분	급여제공기록지출액			
수급자목록	통	가	NC	전송	급여	요양요원시작시간	종료시간	서비스명칭
성명	인정관리번호		구분	구분	제공일	인지활동종료시간		서비스단가
주: 주야간보호형								180분이상(심야, 월요일)
가: 가정방문형								방문당)
△: 월 중 일반**통합재가 계약변경자								70,620 0
○: 월 중 통합재가 유형 변경자(가정형**주간형)								180분이상(방문당)
								54,320 0

√ 월 중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수급자 표시방법(※ 일반은 빈칸으로 표시)

- 주 :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형'으로 이용한 수급자
- 가 :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으로 이용한 수급자
- △ : 해당 급여제공월에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급여 함께 이용한 수급자
- ○ : 해당 급여제공월에 통합재가서비스 유형(가정방문형→주간보호형) 변경한 수급자

■ 화면별 확인사항

● [급여내용 자료관리] 탭

- ‘명세서자동생성’ 버튼 클릭 시, 아래와 같이 팝업이 뜨는 경우
⇒ 청구하려는 금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100%) 초과된 상태로,
① 방문요양 월 금액을 조정하거나
② 가정방문형 월한도 추가산정을 위해 방문간호 명세서 생성을 먼저 진행해야 함

요양요원 전송내역
서비스내용 입력
금여내용 자료관리
연구명세서 조회
연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
종료하기

금여재공일 2024-12-01 ~ 2024-12-31
처리상태 입력건
조회
연구방법 재가금여전자서비스시스템
금여재공분석표
도약취요
화면설명

수급자별
저장구분
전송구분
금여재공기록자동화
금여재공기록보내길
지급
취소
특정내용등록
인력수기배치자료지정
명세서자동생성

수급자목록		요양요원 시작시간	종료시간	서비스명칭	비상가족관계 확인	사건종류	종종자	종종자	가산점	금여재공내용	처리상태				
NO	성명	인정관리번호	NO	성명	인정관리번호	서비스단가	갑상선율(%)	상당단가	비상가족관계 확인	사건종류	종종자	종종자	가산점	금여재공내용	처리상태
1	가	학	1	가	학	2024-12-01	20:00	180분이상(심야, 일요일가산)							
2	가	홍	1	가	홍	2024-12-02	20:00	180분이상(심야, 일요일가산)							
			2	가	홍	2024-12-02	23:00	58,750	0	58,750					
			3	가	홍	2024-12-03	20:00	180분이상(심야, 일요일가산)							
			4	가	홍	2024-12-04	20:00	180분이상(심야, 일요일가산)							
			5	가	홍	2024-12-05	20:00	180분이상(심야, 일요일가산)							
			6	가	홍	2024-12-05	23:00	58,750	0	58,750					

dev.longtermcare.or.kr:9443 내용:
명세서생성을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통합재가서비스 방문간호의 서비스내역
니다.

dev.longtermcare.or.kr:9443 내용:

명세서생성을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통합재가서비스 방문간호의 서비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인



■ 화면별 확인사항

● [청구명세서 조회] 탭

- 명세서 분리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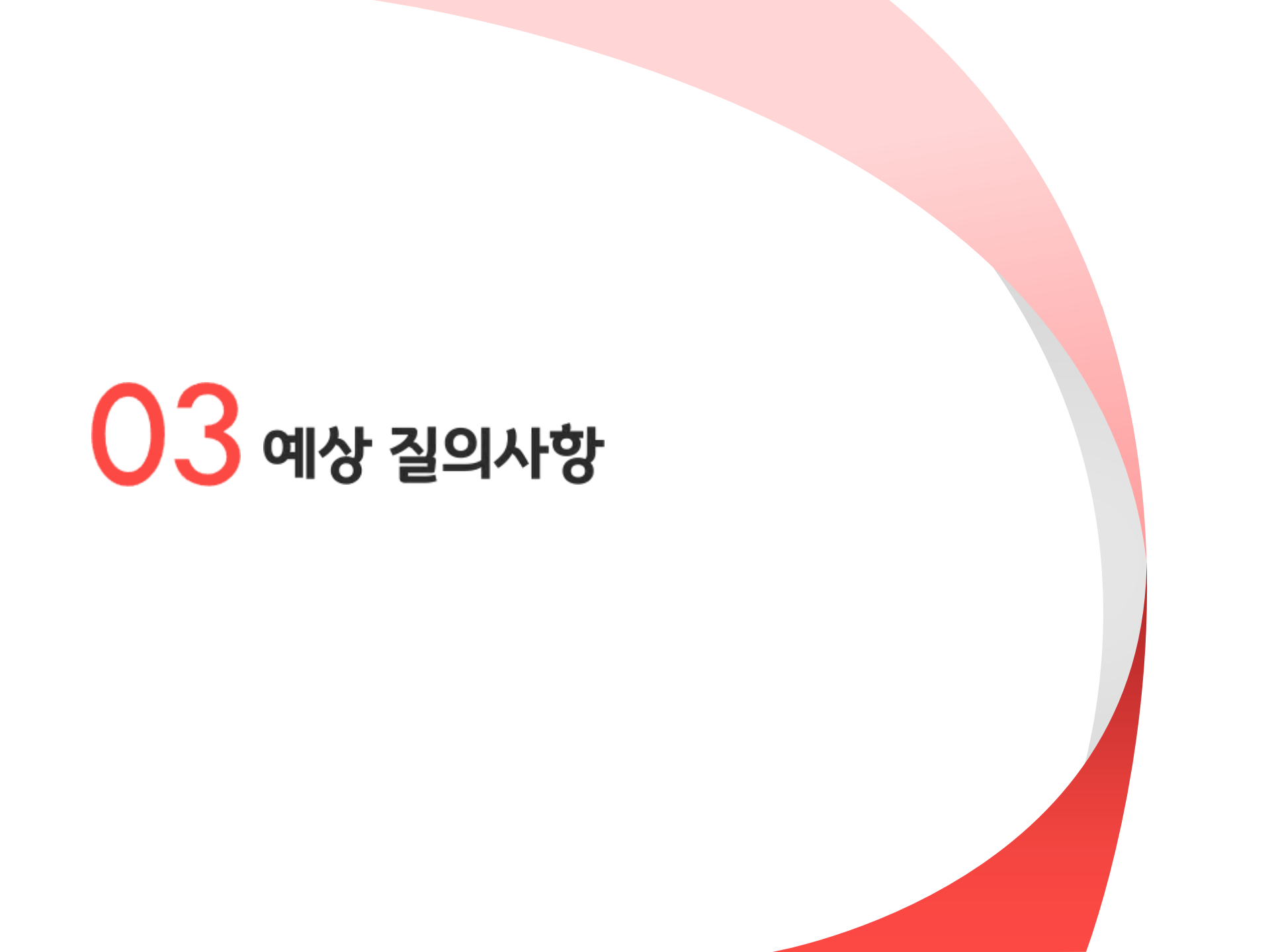
- 급여구분: 일반재가/통합재가(가정방문형 or 주야간보호형)
- 수급자구분: 일반/의료
- 인정유효기간

예시1) 일반 → 통합재가 가정방문형

□ 청구대상자							완료여부 ▼
☐	NO	통	성명	등급	구분	완료여부	처리상태
☐	1		약	4등급	일반	완료	청구의뢰
☐	2	가	약	4등급	일반	완료	청구의뢰

예시2) 통합재가 가정방문형 → 통재 주야간보호형 → 일반 급여

□ 청구대상자							완료여부 ▼
☐	NO	통	성명	등급	구분	완료여부	처리상태
☐	1	가	약	4등급	일반	완료	청구의뢰
☐	2	주	약	4등급	일반	완료	청구의뢰
☐	3		약	4등급	일반	완료	청구의뢰



03 예상 질의사항



■ 예상 질의사항

● Q1)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운영중인 기관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별도의 청구 기간이 있나요?

- A1) 아니요. 기존 급여비용 청구일자에 맞추어 방문 3종(요양, 목욕, 간호)은 1~5일, 시설형(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6일 이후에 급여비용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Q2)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 A2) 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더라도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월한도액 추가산정 가능합니다.
 - (종일방문요양)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형 방문요양 급여로 종일방문요양 이용한 경우
 - (단기보호) 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 급여 이용한 경우(타기관 포함)



■ 예상 질의사항

● Q3) 가정방문형 월 한도액 추가산정 시 급여량은 명세서의 총액을 의미하나요?

- 아니오.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으로 사용한 서비스의 **산정총액 중**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월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 예상 질의사항

- Q4) 통합재가 가정방문형 기관으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명세서 생성하려고 하니, 방문간호를 확인하라는 팝업이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4) 통합재가 가정방문형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시, 기 청구된 서비스횟수(요양 4회 이상,
간호 2회 이상)와 급여량(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방문요양만으로 월 한도액의 100%를 초과할 경우, 방문간호의 청구내역이
없기 때문에 산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방문요양 청구명세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팝업이 뜨는 경우 방문간호의 명세서를 먼저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dev.longtermcare.or.kr:9443 내용:

명세서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통합재가서비스 방문간호의 서비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 예상 질의사항

● Q5)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도 운영 중인 통합재가 가정방문형 기관입니다.

통합재가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도 이용 가능한가요?

- A5) 네. 급여구분을 ‘통합재가 가정방문형’으로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재가급여로도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 가능하나, 일반 재가급여로 계약 후 사용하는 경우 통합재가 가정방문형으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고시 제13조제7항에 따라 주야간보호 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일수를 충족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